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20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주철현 · 황운하 · 김 현
김성범 · 송옥주 · 정준호
임문영 · 염태영 · 진성준
어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사유가 발생한 직후 다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

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122조 전단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 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 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 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 일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 ----- ----- ----- ----- ----- ----- <u>. 다만, 제27조제1</u> <u>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u> <u>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u> <u>거절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 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제17 조, 제19조제2항·제3항, 제20 조제4항·제5항·제7항, 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 <u>제26조제1항</u> ·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 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 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제9	제122조(준용규정) ----- ----- ----- ----- ----- ----- <u>제26조 제1 항</u> <u>(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u> ----

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제2

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

